

경업 금지 및 영업 비밀 약정서

성 명 :

주 소 :

휴대폰번호 :

업무시작일 :

담당 업무 :

신 분 : 근로자 / 프리랜서

위 본인은_____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여 이를 신의로써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만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은 물론 민사법, 형사법 등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어떠한 배상과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약정서는 재직 중 일 때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위약금으로 예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초과분까지 지체 없이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 _____ (서명)

제1조 (영업의 비밀)

- ① 본인이 재직중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주요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은 아래 표에 기재한 바와 같음을 확인한다. 다만,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 표에 기재된 사항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동의하였다.
- ② 영업 비밀은 회사의 소유로서 본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하며 직접 습득한 정보, 업무협약내용 이외의 간접적으로 습득한 정보, 회사 내 타인 또는 회사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를 나타내는 표기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영리추구 목적이 없더라도 사내·외의 어떠한 사람 및 단체에 공유, 유출, 발설, 공표, 제공, 전시하지 아니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내 본래 업무 수행상의 목적을 벗어나 활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재직 기간중 습득 및 지득한 아래와 같은 영업 비밀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주요 기밀내용을 공유하고 위 공유한 기밀 내용을 보안하기 위한 사항과 서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1. 업무수행 중 취득 또는 지원받은 영업비밀
2. "회사"의 영업기법과 관련된 매뉴얼에 대한 정보
3. "회사"의 운영매뉴얼, 운영방법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4.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
5. "회사"와 관련된 사업제휴 및 위탁의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 및 재무에 관한 정보
6. 지적재산권화 되지 않은 "회사"의 고유한 아이디어 및 각종 매뉴얼 등에 관련한 정보
7.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 또는 "회사"의 경영상 노하우 등에 관련한 정보
8. 업무수행을 통해 담당하게 된 on-line과 off-line의 고객자료
9.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부하거나 지급한 각종 서류 자료
10. 회사 임직원들의 인사 및 급여와 배당금을 포함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11. 업무협약자와 회사 또는 임직원간의 특약한 협약 내용 및 기밀

구분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	영업비밀/영업자산의 설명
1	운영 관리 매뉴얼 일체	모든 서비스 매뉴얼 / 철학내용 / 내부 진행 매뉴얼 일체
2	교육 커리큘럼	디자이너,인턴 교육프로그램, 전 직원교육프로그램
3	고객정보	1.매장 제공 고객 전화 번호 2.매장에서 지원한 온라인SNS/오프라인을 통한 사진 &개인 정보 .연락처 일체
4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제2조 (영업비밀 보호의무)

- ①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 ② 퇴직시 회사의 영업비밀 및 그 복사본, 모방품, 기타 회사의 영업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영구히 폐기하고 회사의 확인을 거친다.

제3조 (경업금지의무)

- ①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아래 표에 기재한 지역 내에서 아래 표에 기재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누설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아니 한다.
- ② 업무수행중 습득 및 지득한 아래와 같은 영업 비밀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아닌 된다.

구분	경업금지 지역	경업금지 업무
1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2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3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4.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5.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6,		취업 /관리 /교육 등 미용관련업무

제4조 (위약금, 손해배상)

- ① 제2조 내지 제3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에게 제4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 받는 날까지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개시하거나 취업한 사업장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 본인의 법률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본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배상금을 "회사"에게 지급함을 약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뤄질 수 있다.

제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첨부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 위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한다.

<u>20 년 월 일</u>		
(회사) 상호 :	대표	(인)
(위 본인) 성 명 :	(인감)	

<u>20 년 월 일</u>		
(회사) 상호 :	대표	(인)
(위 본인) 성 명 :	(서명)	

[판례와 법령]

●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08.3.19, 2007카합 3903)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특정한 사업주에 속하여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대부분 포함된다)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 2003.7.16 2002마4380)

경업금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퇴직 후에도 존재한다고 본다(서울민사지법 1996.3.27, 94가합12987).

● 퇴직사원의 경업금지의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1997.6.13, 97다8229)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약정의 효력

(노동부, 근기 01254-1732, 1992.10.17)

"퇴직후 3년 이내에는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위반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업무의 성질 및 계약의 범위, 기업소유 기밀의 보호 이익의 가치성, 대상조치의 마련(예컨대 시용자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손해배상의 예정이 이직을 방지하여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을 예상한 주된 목적이 근로관계를 강제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인 바, 퇴직한 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